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문항거래 금지 및 제재 근거 신설 등〉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02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문항거래 금지 및 제재 근거 신설	3
2. 문항거래 위반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강사 자격 제한	10
3. 위반행위자 직무배제, 정보공개 및 과징금 등	1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22.
3. 회부연월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의 형평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유명강사와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교육시장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이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문항 거래 등의 행위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공정한 입시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항 출제 등의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3년간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나.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의5제1항).

다. 교원에게 문항거래를 요구·의뢰·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제17조제1항제8호의3 및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라.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 등이 위반행위를 하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며,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17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마. 학원설립·운영자가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학원의 임원 또는 강사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이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Ⅲ. 검토의견

1. 문항거래 금지 및 제재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와 그 소속 임직원 및 강사가 교원에게 학습자를 위한 교습자료의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컨설팅 등의 행위를 요구·의뢰·교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문항거래의 금지) 학원설립·운영자(소속 임직원 및 강사를 포함한다)는 제3조에 따른 교원에게 학습자를 위한 교습자료의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컨설팅 등의 행위(이하 “문항거래”라 한다)를 요구·의뢰·교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 ----- ----- ----- -----.

1. ~ 8의2. (생략) <u><신설></u> 9. ~ 12. (생략) ②·③ (생략)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8의3.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문항거래를 한 경우 9.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벌칙) ① _____ _____. 1. ~ 4. (현행과 같음) 5.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문항거래를 한 자 ②·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최근 유명 사교육 강사와 현직 교원 간에 금전적 대가를 수반한 시험 문항 거래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교육과 사교육 간 유착 및 입시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감사원의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2025.2.)결과,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업체 및 학원강사에게 문항을 제작·공급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어 교원·학원 관계자 등 56명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였음. 이후 경찰의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통해 유명 사교육 강사와 현직 교사 간 문항 거래 사례 등이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

· 기소되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¹⁾중임.

□ 이와 관련하여 앞서 발의된 ^①김문수·조정훈 의원안은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에게 시험 문항·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제공받은 문항·정보를 교습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고, ^②박성훈 의원안은 ‘교원’이 학원의 학습자를 위한 문항 출제·컨설팅 등의 교습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김용태 의원안은 ^①과 유사하게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원에게 학습자를 위한 교습자료의 제작을 목적으로 문항 출제·컨설팅 등을 요구·의뢰·교사하는 행위를 ‘문항거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1) 이 중 유명 사교육 강사 등이 현직 교사들로부터 수능 대비 문항을 제공받고 금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8. 26. 해당 금품이 문항 거래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음.

< 문항거래 관련 금지행위 비교 >

구분	김문수 의원안	조정훈 의원안	박성훈 의원안	김용태 의원안
규율대상	학원설립·운영자, 소속 임직원 및 강사		교원 + 학원설립·운영자·강사·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	학원설립·운영자, 소속 임직원 및 강사
문항거래 상대방	각종 시험의 출제·검토·관리 등 업무 수행자	각종 시험의 출제 업무 수행자	학원법 제3조에 따른 교원	
문항 관련 금지행위	시험 문항·정보 제공을 청탁·권유	시험 문항·정보 제공을 요청	교원의 문항 출제·컨설팅 등 교습행위 금지 및 이에 대한 요구·의뢰·교사·협력 금지	교습자료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컨설팅 등을 요구·의뢰·교사
제공받은 문항·정보의 이용	교습자료 제작·배포·교습 금지		—	—
학원 교습자료의 시험 반영 요청	금지	—	—	—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박성훈 의원안은 교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행정처분 대상	학원	학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원
행정처분 내용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박성훈 의원안) 교습소 -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정지 개인·과외교습자 -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			
행정처분 면책규정	○	○	—	—

□ 학원설립·운영자나 강사 등이 현직 교원에게 사교육업체 등에 문항을 제작·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는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학원법에는 학원설립·운영자나 강사 등이 교원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직접 금지·처벌

하는 규정이 없음.

개정안은 문항거래를 직접 금지하고 이에 대한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기존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과 비교할 때 금지행위의 범위와 상대방, 행정처분 등에 차이가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김용태 의원안은 학원설립·운영자와 소속 임직원 및 강사가 교원에게 학습자를 위한 교습자료 제작을 목적으로 문항 출제·컨설팅 등을 요구·의뢰·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김문수 의원안은 ①시험 문항·정보의 제공을 청탁·권유하는 행위, ②제공받은 문항·정보를 이용하여 교습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교습하는 행위, ③학원 교습자료의 문항·정보가 실제 시험에 반영되도록 청탁·권유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어 금지행위의 범위가 보다 넓음. 따라서 문항거래 방지의 필요성과 함께 어떠한 행위까지 금지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김용태 의원안의 ‘컨설팅 등’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행위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금지행위의 상대방 범위에도 차이가 있음. 김용태 의원안은 학원법 제3조에 따른 교원²⁾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김문수·조정훈 의원안은 각종 시험의 출제·검토·관리 등 시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김용태 의원안의 경우 시험의 출제·검토·관리 등에 관여하더라도 교원이 아닌 자는 금지행위의 상대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문항거래의 규율 취지에 비추어 상대방의 범위를 이와 같이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김용태 의원안은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가 문항거래를 한 경우 학원설립·운영자의 주의·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김문수·조정훈 의원안은 학원설립·운영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의 개별적인 위반행위만으로 학원 전체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일정한 면책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학원

2) 학원법 제3조의 '교원'은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아 사립학교 교원 및 기간제교원 등도 포함될 수 있으나, 교육공무직·행정직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명시적으로 제외됨

설립·운영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학원총연합회도 개별 강사의 위반행위로 학원 전체가 제재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요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문항거래 위반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강사 자격 제한

가. 개정안의 내용

- ☐ 개정안은 문항거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3년간 학원 설립·운영을 제한하고, 해당 기간 동안 학원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 5. (생략) <u><신설></u> 6. 6의2. (생략) 7. 법인으로서는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생략) 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u><단서 신설></u>	제9조(결격사유 등) ①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6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6의2. (현행과 같음) 7.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6호의2에-----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강사 등) ① ----- ----- -----, 다만, 제9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가 될 수 없다.

나. 검토의견

- ☐ 현행 학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년간,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년간 학원 설립·운영을 제한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문항거래 금지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년간 학원 설립·운영을 제한하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원 강사가 될 수 없도록 강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임.

<학원 설립·운영 등록 결격사유>

구분	결격사유	결격기간	대상
제3호	1.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3년	모든 법률
제4호	벌금형 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년	학원법
강경숙의원안 제6호의3 (신설)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년	저작권법·청탁금지법·표시광고법 등
김용태의원안 제5호의2 (신설)	제16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년	교원에게 교습자료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컨설팅 등을 요구·의뢰·교사하는 행위

참고로, 강경숙 의원안도 일정한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년간 학원 설립·운영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강경숙 의원안은 「저작권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김용태 의원안은 문항거래 금지행위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 문항거래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학원 설립·운영 및 강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결격기간 및 강사 자격 제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먼저, 현행 학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년간,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년간 학원 설립·운영을 제한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문항거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년간 학원 설립·운영을 제한하려는 것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이미 학원 설립·운영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실질적인 제재 강화는 문항거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3년간 결격사유로 포함시키는데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문항거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학원법을 직접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의 결격기간인 1년보다 장기간 학원 설립·운영을 제한하게 됨.

현행법이 금고 이상의 형과 벌금형의 형벌로서의 경중을 고려하여
결격기간을 각각 3년과 1년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항
거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과 동일하게 3년
의 결격기간을 두는 것이 현행 결격사유 체계와 균형을 이루는지 검
토할 필요가 있음.

물론 문항거래 행위는 교육의 공정성과 학원 운영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벌금형의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포함할 필요성이 인정
될 수 있음. 다만, 결격사유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제재 수준 간의 비례성 등을 고려하여 결
격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 「학원법」³⁾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
는 강사에 대하여 학력, 교원자격, 국가기술자격, 교습경력 등을 기준
으로 강사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원법」 자체에는 일정한 형사
처벌 전력을 이유로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별도의 결격사유는 두
고 있지 않음.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⁴⁾ 및

3) 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학원 등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음.(강사의 자격기준은 참고자료 참조)

□ 개정안은 문항거래 금지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강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임.

강사는 학생을 직접 교습하는 자라는 점에서 교육의 공정성과 학원 운영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문항거래 전력자에 대한 일정한 자격 제한을 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현행법은 강사에 대하여 형사처벌 전력을 이유로 한 일반적인 결격사유를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은 문항거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새롭게 결격사유를 두려는 것임. 따라서 다른 법률 위반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6.1.19, 2016.5.29, 2018.1.16, 2018.3.13, 2019.11.26, 2020.6.2, 2020.12.8, 2021.1.12, 2023.4.11, 2024.9.20, 2025.4.22, 2025.10.1>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 2의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행위와 달리 문항거래 위반에 대해서만 강사 자격을 제한할 필요성이 충분한지, 위반행위와 강사의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결격사유의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결격사유 신설 취지에 공감하면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강사 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경찰청도 형의 종류에 따라 결격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위반행위자 직무배제, 정보공개 및 과징금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①학원설립·운영자에게 소속 임직원 및 강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②문항거래 위반자를 직무에서 배제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③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④관리·감독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 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u>운영</u> 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 ----- <u>운영하되</u> <u>소속 임직원 및 강사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며</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5(정보의 공개) 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u>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별로 분류하여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u>	제15조의5(정보의 공개) ① ----- -----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u> ----- ----- ----- -.
<신설>	1. <u>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u> <u>이 경우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u>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3. 제1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위반행위를 한 자의 직무배제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가 제16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해당 임직원 또는 강사를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학원설립·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직무배제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배제 및 통보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과징금) ① 교육감은 학원설립·

운영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학원의 임직원 또는 강사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학원설립·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신설> 10. (생략)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료) ① _____ _____ _____.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10.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의 소속 임직원 및 강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명시하고, 문항거래 위반자를 직무에서 배제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관리·감독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련하여, 조정훈 의원안은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의 금지행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경숙 의원안은 학원설립·운영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과 일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⁵⁾.

< 위반행위자 직무배제, 정보공개 및 과징금 비교 >

구분	조정훈 의원안	강경숙 의원안	김용태 의원안
학원 설립운영자의 관리·감독 의무	소속 임직원 및 강사	임원 또는 강사	소속 임직원 및 강사
직무배제	금지행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직무배제	—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인지한 경우 직무배제
교육감 통보	—	—	직무배제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
직무배제 관련 과태료	직무배제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		직무배제 결과 미통보 시 300만원 이하
정보공개	—	—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현황 공개
과징금	—	매출액의 30% 이하 / 10억원 이하	매출액의 20% 이하 / 10억원 이하

5) 김문수 의원안도 학원설립·운영자에게 소속 임직원 및 강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직무배제·정보공개·과징금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박성훈 의원안은 이러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문항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학원설립·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직무배제와 정보공개 및 과징금의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제재 수준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직무배제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가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해당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이를 인지한 경우’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문언이 다소 불명확하고, ‘인지한’ 주체가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인지한 경우’가 단순한 제보나 의혹 제기까지 포함하는지, 수사 개시 또는 객관적인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위반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자를 모든 직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항거래와 관련된 교습·교습자료 제작 등의 직무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현황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습자와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

장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현황의 공개는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으므로, 공개 전에 해당 학원설립·운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보완⁶⁾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과징금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가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과징금은 학원설립·운영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 6)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법인명, 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이하 “위반사실등”이라 한다)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공표로 인하여 당사자의 명예·신용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공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공표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방법과 제출 의견의 반영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로 본다.
- ⑥ 위반사실등의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한다.
- ⑦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하여,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현행 학원법은 다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문항거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행정처분과 과징금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 제재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과징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그 부과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전제가 되는 관리·감독 의무와 ‘위반행위’의 범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넷째, 과태료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가 직무배제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직무배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다만, 조정훈 의원안은 직무배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김용태 의원안은 직무배제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배제가 제도의 핵심 의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대상을 통보의무 위반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직무

배제의 요건과 대상 직무를 명확히 하고, 정보공개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하며, 과징금의 부과대상과 면책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직무배제 및 과징금이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193